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2021년 10월 6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6.(수)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10. 5.(화)	담당부서	재생에너지정책과
담당과장	이재식 과장(044-203-5360)	담 당 자	김범수 사무관(044-203-5362)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 '22년 12.5% → '26년까지 25.0%로 상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입법예고 기간 : '21.10.6일~11.1일)

○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함

□ **탄소중립** 실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 마련**

○ 기존 '22년 이후 10%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 마련**

<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 (시행령 별표3) >

연 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이후
의무비율	12.5%	14.5%	17.0%	20.5%	25.0%

□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하여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22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임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

【붙 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김범수 사무관(☎ 044-203-53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69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21.4.20)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 조정(별표3)

- 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22년 이후 10%로 고정된 의무공급비율을 '26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90kbs@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2,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90kb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연도	비율(%)
2012년	2.0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0
2016년	3.5
2017년	4.0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0
2021년	9.0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
2027년 이후	25.0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

해당 연도	비율(%)
2012년	2.0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0
2016년	3.5
2017년	4.0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0
2021년	9.0
2022년	10.0
2023년 이후	10.0

</td><td>

[별표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

해당 연도	비율(%)
2012년	2.0
2013년	2.5
2014년	3.0
2015년	3.0
2016년	3.5
2017년	4.0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	7.0
2021년	9.0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
2027년 이후	25.0

</td></tr>
</table>